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수입통관

이슈바로가기

미국,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VQIP) 지침 업데이트

- 2024년 11월 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 (VQIP)의 지침을 업데이트함
- 주요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은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사업체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함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혜택(업데이트) : 프로그램 참가자는 회계연도 내내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외국 공급업체와 식품을 추가할 수 있음 (기존: 다음 회계연도 시작할 때 변경 가능)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기준 : 식품현대화법(FSMA) 모든 규정 준수해야 하며, FDA 통관서류관리자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문서 통관서류관리자(filer) 또는 통관중개인(broker)을 선임해야 함. 또한 데이터 범용 번호 시스템(DUNS) 번호가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FDA 산업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 매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참여 신청서 제출 가능
 - 수수료 지불

출처: FDA, FDA Updates Guidance for the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2024.11.14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포장식품 라벨링 표시 기준 개정 제안

- 2024년 11월 8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개정을 제안함. 이번 개정안은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새롭게 포함시키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명칭을 식품 라벨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함
- 주요 라벨링 요건(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
 -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참깨(sesame) 및 그 제품 신규 포함**
 -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고 식품에 황산염이 10mg/kg 이상의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식품 라벨에 성분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단,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형 포장의 경우, 성분 목록, 로트 식별 번호, 날짜 표시 및 보관 지침과 사용 지침을 포함한 필수 라벨링 항목 면제 가능
 - 식품에 의도하지 않은 알레르겐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함
 - 성분 목록 바로 아래 또는 근처에 별도의 문구로 표시
 -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사한 문구로 작성
 - 알레르기성 식품 및 성분의 경우 규정된 명칭으로 작성해야 함(상세 내용은 CXS 1-1985의 부록을 통해 확인 가능)



TBT

이슈바로가기

출처: FAO, Request for comments on the standards and related texts submitted by the 48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 2024.11.20

인도,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에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요건 강화

- 2024년 11월 12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식품 사업자에게 식품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함
- 주요 변경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원문 및 심층기사 참조)
 -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될 시점에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30% 또는 45일 전의 최소 유통기한을 갖도록 해야 함
 - 식품안전표준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함
 - 식품안전표준청은 유효한 FSSAI 라이선스 또는 등록 없이는 어떤 식품사업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품에 대한 주장은 식품안전표준청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실제 라벨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함
 - 포장 식품의 라벨에 총 설탕, 소금 및 포화 지방의 영양 정보를 굵은 글씨와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출처: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FSSAI Reinforces Food Safety Compliance amongst E-commerce Food Business Operators (FBOs), 2024.11.12



TBT

이슈바로가기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TBT

이슈바로가기

베트남, 2010년 식품안전법 개정안 발표

- 2024년 11월 18일, 베트남 보건부는 「2010년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모든 식품 제품의 등록 의무화를 제안함. 현재 '자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향후 관할 당국에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함
 - 주요 개정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
 - 모든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접촉 재료(식품용 도구, 포장재 및 용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당국에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함
 - ※ 기존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자체 신고에서 제품 신고 등록이 의무화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함**
 - 등록 유효 기간 : 5년
 - 정부가 제품 신고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 의견 수렴 마감일 : **2024년 12월 11일**

출처 : VFA,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안 1년 시행 연기 개정안 통과

- 유럽연합은 2023년 4월 산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2024년 11월 14일 개정안을 통과시킴. 해당 규정은 2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미루어 **25년 12월 30일로 변경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Kati 유럽지사 동향](#) 참조)
 - 규제 대상 품목 : **소고기, 커피, 대두, 코코아, 고무 등 7개 품목과 그 하위 제품**
 - 시행 예정일 :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
 - 실사 의무 및 증명 요구 : GPS 좌표, 위성 사진,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필요, 증명 불이행 시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매출의 최소 4% 과징금 부과됨
 - 기존 등급에서 실사 의무 면제가 가능한 '무위험군(No Risk)'군 신설됨



수입통관

출처 : Kati 유럽지사, [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안(EUDR) 시행 1년 연기 개정안 통과, 2024.11.20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관리 강화

-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총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각 지방 및 도시의 세관에 검사 및 감독 지시를 내림
- 주요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 관리 강화 조치
 - 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의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독립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함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베트남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산업통상부의 시스템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세관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기타 조치 : 화물 가치 평가, 세금 및 허위 신고 방지, 수입품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확인 등



수입통관

출처 : 베트남 관세청, Tổng cục Hải quan tăng cường quản lý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giao dịch qua thương mại điện tử, 2024.11.13

베트남, 6세 미만 아동용 우유 및 기능성 식품의 가격 신고 규제 강화

- 2024년 11월 18일, 베트남은 6세 미만 아동용 우유 및 기능성 식품의 가격 신고 및 안정화에 관한 규정을 담은 Circular 33/2024/TT-BYT를 발표함.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Circular No. 30/2013/TT-BYT 및 Circular No. 22/2018/TT-BYT를 대체함
 - 주요 내용(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 가격 신고 대상 제품
 - 6세 미만 아동용 우유: 36개월 이하 아동을 위한 영양 제품 및 동물성 우유를 포함한 영양 제품
 - 6세 미만 아동용 기능성 식품: 건강 보조제, 의료 영양 식품, 보충 식품, 특수 식단용 식품
 - 가격 신고 요건
 - 제품명, 제품 분류, 제품 형태, 제품 신고 번호 등을 포함한 기술적 특성 명시
 - 관련 기관에 가격 신고 문서 제출 필요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TBT

출처 : 베트남 VFA, Bộ Y tế ban hành THÔNG TƯ số 33/2024/TT-BYT ngày 15/11/2024, 2024.11.18